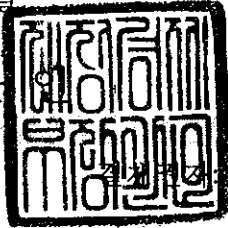


정보(□공개 □부분공개 ■비공개) 결정통지서

수 신 자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승현
(137-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-3 신정빌딩 5층)

접 수 일 자	2008. 1. 15.	접 수 번 호	23
청 구 정 보 내 용	1. 2007. 10. 4.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재차 발견된 것과 관련,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또는 협의한 관계장관 회의 및 관계 실무 공무원 회의의 회의록 2. 2007. 7. 29. 등뼈 발견된 것과 관련, 검역재개를 결정 또는 협의한 관계장관 회의 및 관계 실무 공무원 회의의 회의록 3. 미국 소의 광우병 위험요인 통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또는 검토자료		
공 개 내 용			
비 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내용 및 사유	· 1번 질의항목과 관련, 우리부는 2007. 10. 4. 등뼈 검출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 또는 협의한 관계장관 회의 및 관계 실무 공무원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 · 2번 질의항목 중 관계장관회의의 회의록은 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”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고, 이를 공개할 경우,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· 2번 질의항목 중 관계 실무 공무원 회의의 회의록과 관련, 우리부는 당해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 · 3번 질의항목은 농림부 소관사항으로 우리부에는 해당자료가 존재하지 않음		
공 개 방 법	공개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시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제인화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
	교부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 방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모사전송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
공 개 일 시 (기 간)		공 개 장 소	
수 수 료 (A)	우 송 료 (B)	수수료감면액 (C)	계 (A+B-C)
원	원	원	원
수수료산정내역			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 2008년 1월 24일 재정경제부 장관			
기안자: 5급 박진무		 과장 박일영	
협조자			
시 행 통상기획과 -30(2008 . 1. 25.)			
우427-72/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/http://www.mofe.go.kr/			
전화(02-2150-2663) /전송(02-3679-6110) /pjm2997@mofe.go.kr			

※ 유 의 사 항

-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1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2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3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 또는 현금(기타 공공기관)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(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·수입증지 또는 현금)와 우송료(우표 등)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.